불용품 처리 규정

□ 제정 : 1999. 10. 1
□ 개정 : 2000. 3. 1
□ 개정 : 2011. 6. 30
□ 개정 : 2017. 8. 31
□ 개정 : 2019. 6. 18
□ 개정 : 2023. 6.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의 불용품에 대한 관리 및 그 처분에 관한 사무를 정확히 하여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불용품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

1. 가치가 없거나 유효물품으로서 사용하지 않은 물품
2. 철거된 재료로서 불량품
3. 기타 폐품 및 잡품으로서 경제적 교환가치가 없는 물품

제3조(적용범위) 적용범위는 교내 전체 부서 및 학과에 적용한다.

제4조(절차) ① 불용품의 처분은 자산관리처 자산관리팀에서 주관한다.

② 해당부서가 불용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소정양식(서식 1)에 따라 관리과에 처분 요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물품을 관리 사용하는 부서에서 직접 처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하여 자산관리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야 하며 즉시 자산관리팀에 통보하여 처분한다.

제5조(처분결정) ① 불용품 처분 예정가격이 500,000원을 초과 할 때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 처분한다.

② 불용품 예정가격이 500,000원 미만일 때에는 자산관리처장이 전결한다.

제6조(처분) 제4조에 불용품으로 결정된 물품은 자산관리팀에서 폐기 또는 매각처리하고 처분대금은 학교 잡수입 계정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결재를 받아 별도의 계정에 입금시킬 수 있다.

제7조(대장정리) 불용품으로 처리된 물품은 관계대장 및 카드에 정리하되 비고란에 그 내용을 명

기하여야 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본 규정은 199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규정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결정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시행일) 본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 1)

폐기 신청서

부서(학과)명 :

1. 불용품 명세

자산번호	자 산 명	수량	(폐기, 반납)사유	단가	금액	비 고

2. 처리요망사항 :

위와 같이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부서(학과)장 : (인)

결재	계	처(팀)장